이안 그랑센텀 천안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이안 그랑센텀 천안'은 사이버 견본주택(www.iaanca.com)으로 동시 운영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사업주체 홈페이지(www.iaanca.com)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분양일정에 따른 각 시기별 견본주택 관람객 및 당첨자서류 제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공급계약일 관람 불가)
- 추후 COVID-19확산 상황에 따른 정부정책 및 견본주택 관람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중에는 방문 시간예약 운영 (방문시간 예약시 개별 안내 예정)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견본주택 관람, 서류검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임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당 견본주택에서 확인 기준)
- 입장 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체온측정 등)에 불응 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감염증 감염(자가격리 포함)
- 기타 견본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본 견본주택은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람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점 양해바랍니다.

■'이안 그랑센텀 천안'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에 따라 자세한 분양정보를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분양 상담전화(1600-804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자격 및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확인 및 청약가점계산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1.13.(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본 아파트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수도권 외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단, 향후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분양권전매는 계약금(10%)을 완납한 이후 사업주체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이므로 본 아파트 청약 당첨 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본 아파트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천안시 고시 제2020-301호」에 의거하여, 천안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0.5.13.이전부터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이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간주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 거주 중인 경우 :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세대원이 국외 체류한 경우 : 국외 체류기간 여부 관계없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세대원이 국외 체류 기간이 있는 경우 :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청약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청약 가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 봅니다. 단,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해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란 필로티를 두는 경우 가장 낮은 층을 말함)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의 신청순서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청약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까지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당첨자 모집공고 홈페이지(www.iaanca.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일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2018.02.09.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견본주택에는 확정형 기준 59, 74B, 84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CG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11월 24일(화)	11월 25일(수)	11월 26일(목)	12월 2일(수)	12월 14일(월) ~ 12월 18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장애인 및 만65세 고령자 등 인터넷취약자인 경우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10:00~14:00)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접수 불가	■한국감정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이안 그랑센텀 천안'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215-29번지)

※견본주택의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첨자분들은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지 않을 시 입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www.iaanca.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의 관리는 당사 및 한국감정원에서 제공된 청약신청 정보 등에 의거 진행하오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2020.09.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재생과 – 11375호(2020.11.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62–53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4~25층 9개동 총 816세대[조합 135세대, 임대 41세대, 보류지 7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633세대 [특별공급 332세대(일반(기관추천) 66세대, 다자녀가구 66세대, 신혼부부 129세대, 노부모 부양 22세대, 생애최초 4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3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분양세대수	저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20001261	01	59.9600	59	59.9600	22.2300	82.1900	48.3800	130.5700	30.2451	190	19	19	38	6	14	96	94	9
		02	64.9800A	64A	64.9800	23.6800	88.6600	52.4300	141.0900	32.7772	45	5	5	9	2	4	25	20	2
		03	64.9800B	64B	64.9800	23.8700	88.8500	52.4300	141.2800	32.7772	71	8	8	15	3	5	39	32	4
		04	74.8800A	74A	74.8800	26.3400	101.2200	60.4200	161.6400	37.7710	29	3	3	6	1	3	16	13	2
		05	74.9700B	74B	74.9700	26.9200	101.8900	60.4900	162.3800	37.8164	236	24	24	48	8	17	121	115	13
		06	84.8700A	84A	84.8700	30.0500	114.9200	68.4800	183.4000	42.8102	30	3	3	6	1	3	16	14	4
		07	84.9700B	84B	84.9700	29.6700	114.6400	68.5600	183.2000	42.8606	32	4	4	7	1	3	19	13	3
			합계								633	66	66	129	22	49	332	301	37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관리 시스템 필요로 인하여 소수점 4자리 표시를 위해 '0'을 추가하였습니다.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하층 우선배정세대(37세대)는 일반공급 633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며,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과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잔여지분은 해당 동 ...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면적은 소수점 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금액 없음)

※특별공급 미청약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자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주택형	공급세대수	동·호구분	층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1차 계약시	계약금 2차 계약일로부터 1개월	중도금 1회(10%) 2021.04.20.	2회(10%) 2021.08.20.	3회(10%) 2021.12.20.	4회(10%) 2022.05.20.	5회(10%) 2022.09.20.	6회(10%) 2023.01.20.	잔금(30%) 입주지정일
59.9600	190	102동 3호 104동 3호 105동 3,4호 107동 3,4호 108동 3,4호 109동 3호	1층	2	132,740,000	130,430,000	263,170,000	10,000,000	16,317,000	26,317,000	26,317,000	26,317,000	26,317,000	26,317,000	26,317,000	78,951,000
			2층	9	134,860,000	132,510,000	267,370,000	10,000,000	16,737,000	26,737,000	26,737,000	26,737,000	26,737,000	26,737,000	26,737,000	80,211,000
			3층	9	136,970,000	134,600,000	271,570,000	10,000,000	17,157,000	27,157,000	27,157,000	27,157,000	27,157,000	27,157,000	27,157,000	81,471,000
			4~6층	21	138,390,000	135,980,000	274,370,000	10,000,000	17,437,000	27,437,000	27,437,000	27,437,000	27,437,000	27,437,000	27,437,000	82,311,000
			7~9층	21	139,800,000	137,370,000	277,170,000	10,000,000	17,717,000	27,717,000	27,717,000	27,717,000	27,717,000	27,717,000	27,717,000	83,151,000
			10~19층	85	142,620,000	140,150,000	282,770,000	10,000,000	18,277,000	28,277,000	28,277,000	28,277,000	28,277,000	28,277,000	28,277,000	84,831,000
			20~25층	43	145,450,000	142,920,000	288,370,000	10,000,000	18,837,000	28,837,000	28,837,000	28,837,000	28,837,000	28,837,000	28,837,000	86,511,000
64.9800A	45	104동 2호 109동 2호	1층	2	146,110,000	143,570,000	289,680,000	10,000,000	18,968,000	28,968,000	28,968,000	28,968,000	28,968,000	28,968,000	28,968,000	86,904,000
			2층	2	148,440,000	145,860,000	294,300,000	10,000,000	19,430,000	29,430,000	29,430,000	29,430,000	29,430,000	29,430,000	29,430,000	88,290,000
			3층	2	150,770,000	148,150,000	298,920,000	10,000,000	19,892,000	29,892,000	29,892,000	29,892,000	29,892,000	29,892,000	29,892,000	89,676,000
			4~6층	6	152,330,000	149,680,000	302,010,000	10,000,000	20,201,000	30,201,000	30,201,000	30,201,000	30,201,000	30,201,000	30,201,000	90,603,000
			7~9층	5	153,880,000	151,210,000	305,090,000	10,000,000	20,509,000	30,509,000	30,509,000	30,509,000	30,509,000	30,509,000	30,509,000	91,527,000
			10~19층	20	156,990,000	154,260,000	311,250,000	10,000,000	21,125,000	31,125,000	31,125,000	31,125,000	31,125,000	31,125,000	31,125,000	93,375,000
			20~25층	8	160,100,000	157,320,000	317,420,000	10,000,000	21,742,000	31,742,000	31,742,000	31,742,000	31,742,000	31,742,000	31,742,000	95,226,000
64.9800B	71	103동 4호 104동 1,4호 106동 4호 109동 1호	1층	4	147,150,000	144,600,000	291,750,000	10,000,000	19,175,000	29,175,000	29,175,000	29,175,000	29,175,000	29,175,000	29,175,000	87,525,000
			2층	4	149,500,000	146,910,000	296,410,000	10,000,000	19,641,000	29,641,000	29,641,000	29,641,000	29,641,000	29,641,000	29,641,000	88,923,000
			3층	4	151,850,000	149,210,000	301,060,000	10,000,000	20,106,000	30,106,000	30,106,000	30,106,000	30,106,000	30,106,000	30,106,000	90,318,000
			4~6층	12	153,420,000	150,750,000	304,170,000	10,000,000	20,417,000	30,417,000	30,417,000	30,417,000	30,417,000	30,417,000	30,417,000	91,251,000
			7~9층	11	154,980,000	152,290,000	307,270,000	10,000,000	20,727,000	30,727,000	30,727,000	30,727,000	30,727,000	30,727,000	30,727,000	92,181,000
			10~19층	32	158,110,000	155,370,000	313,480,000	10,000,000	21,348,000	31,348,000	31,348,000	31,348,000	31,348,000	31,348,000	31,348,000	94,044,000
			20~22층	4	161,250,000	158,440,000	319,690,000	10,000,000	21,969,000	31,969,000	31,969,000	31,969,000	31,969,000	31,969,000	31,969,000	95,907,000
74.8800A	29	103동 3호 106동 1호	1층	1	170,140,000	167,190,000	337,330,000	10,000,000	23,733,000	33,733,000	33,733,000	33,733,000	33,733,000	33,733,000	33,733,000	101,199,000
			2층	2	172,860,000	169,850,000	342,710,000	10,000,000	2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34,271,000	102,813,000
			3층	2	175,580,000	172,520,000	348,100,000	10,000,000	2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104,430,000
			4~6층	6	177,390,000	174,300,000	351,690,000	10,000,000	25,169,000	35,169,000	35,169,000	35,169,000	35,169,000	35,169,000	35,169,000	105,507,000
			7~9층	5	179,190,000	176,080,000	355,270,000	10,000,000	25,527,000	35,527,000	35,527,000	35,527,000	35,527,000	35,527,000	35,527,000	106,581,000
			10~19층	10	182,810,000	179,640,000	362,450,000	10,000,000	26,245,000	36,245,000	36,245,000	36,245,000	36,245,000	36,245,000	36,245,000	108,735,000
			20~24층	3	186,440,000	183,190,000	369,630,000	10,000,000	26,963,000	36,963,000	36,963,000	36,963,000	36,963,000	36,963,000	36,963,000	110,889,000
74.9700B	236	101동 1호 102동 1,2호 103동 1,2호 105동 1,2,5호 106동 1호 107동 1,2,5호 108동 2,5호	1층	6	169,590,000	166,650,000	336,240,000	10,000,000	23,624,000	33,624,000	33,624,000	33,624,000	33,624,000	33,624,000	33,624,000	100,872,000
			2층	13	172,300,000	169,300,000	341,600,000	10,000,000	2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102,480,000
			3층	13	175,010,000	171,960,000	346,970,000	10,000,000	24,697,000	34,697,000	34,697,000	34,697,000	34,697,000	34,697,000	34,697,000	104,091,000
			4~6층	38	176,810,000	173,730,000	350,540,000	10,000,000	25,054,000	35,054,000	35,054,000	35,054,000	35,054,000	35,054,000	35,054,000	105,162,000
			7~9층	37	178,610,000	175,510,000	354,120,000	10,000,000	25,412,000	35,412,000	35,412,000	35,412,000	35,412,000	35,412,000	35,412,000	106,236,000
			10~19층	103	182,220,000	179,050,000	361,270,000	10,000,000	26,127,000	36,127,000	36,127,000	36,127,000	36,127,000	36,127,000	36,127,000	108,381,000
			20~25층	26	185,830,000	182,600,000	368,430,000	10,000,000	26,843,000	36,843,000	36,843,000	36,843,000	36,843,000	36,843,000	36,843,000	110,529,000
84.8700A	30	101동 2,4호 106동 2,4호	1층	2	195,070,000	191,670,000	386,740,000	10,000,000	28,674,000	38,674,000	38,674,000	38,674,000	38,674,000	38,674,000	38,674,000	116,022,000
			2층	2	198,180,000	194,740,000	392,920,000	10,000,000	29,292,000	39,292,000	39,292,000	39,292,000	39,292,000	39,292,000	39,292,000	117,876,000
			3층	2	201,300,000	197,790,000	399,090,000	10,000,000	29,909,000	39,909,000	39,909,000	39,909,000	39,909,000	39,909,000	39,909,000	119,727,000
			4~6층	6	203,370,000	199,830,000	403,200,000	10,000,000	3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120,960,000
			7~9층	1	205,450,000	201,870,000	407,320,000	10,000,000	30,732,000	40,732,000	40,732,000	40,732,000	40,732,000	40,732,000	40,732,000	122,196,000
			10~19층	7	209,590,000	205,950,000	415,540,000	10,000,000	31,554,000	41,554,000	41,554,000	41,554,000	41,554,000	41,554,000	41,554,000	124,662,000
			20~22층	6	213,740,000	210,030,000	423,770,000	10,000,000	32,377,000	42,377,000	42,377,000	42,377,000	42,377,000	42,377,000	42,377,000	127,131,000
84.9700B	32	101동 3호 102동 1,2호 106동 3호	1층	3	193,650,000	190,280,000	383,930,000	10,000,000	28,393,000	38,393,000	38,393,000	38,393,000	38,393,000	38,393,000	38,393,000	115,179,000
			2층	3	196,740,000	193,320,000	390,060,000	10,000,000	29,006,000	39,006,000	39,006,000	39,006,000	39,006,000	39,006,000	39,006,000	117,018,000
			3층	3	199,830,000	196,350,000	396,180,000	10,000,000	29,618,000	39,618,000	39,618,000	39,618,000	39,618,000	39,618,000	39,618,000	118,854,000
			4~6층	6	201,890,000	198,380,000	400,270,000	10,000,000	30,027,000	40,027,000	40,027,000	40,027,000	40,027,000	40,027,000	40,027,000	120,081,000
			7~9층	6	203,950,000	200,400,000	404,350,000	10,000,000	30,435,000	40,435,000	40,435,000	40,435,000	40,435,000	40,435,000	40,435,000	121,305,000
			10~19층	13	208,070,000	204,450,000	412,520,000	10,000,000	31,252,000	41,252,000	41,252,000	41,252,000	41,252,000	41,252,000	41,252,000	123,756,000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	64A	64B	74A	74B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충남동부 보훈지청	7	2	4	2	9	2	3	29
	장애인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6	1	2	1	7	1	1	1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3	1	1	0	4	0	0	9
	중소기업 근로자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3	1	1	0	4	0	0	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9	5	8	3	24	3	4	6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9	7	12	5	36	5	6	100
		일반공급(25%)	9	2	3	1	12	1	1	2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2	3	1	8	1	1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14	4	5	3	17	3	3	49
합계			96	25	39	16	121	16	19	332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6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6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29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2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6,665,980원	6,226,343원 ~7,471,610원	6,938,355원 ~8,326,025원	7,594,084원 ~9,112,900원	8,249,813원 ~9,899,774원	8,905,542원 ~10,686,649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00%초과~130%이하	5,554,984원 ~7,221,478원	6,226,343원 ~8,094,245원	6,938,355원 ~9,019,860원	7,594,084원 ~9,872,308원	8,249,813원 ~10,724,756원	8,905,542원 ~11,577,20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7,221,478원	7,471,611원 ~8,094,245원	8,326,026원 ~9,019,860원	9,112,901원 ~9,872,308원	9,899,775원 ~10,724,756원	10,686,650원 ~11,577,203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20%초과~140%이하	6,665,981원 ~7,776,976원	7,471,611원 ~8,716,879원	8,326,026원 ~9,713,696원	9,112,901원 ~10,631,716원	9,899,775원 ~11,549,737원	10,686,650원 ~12,467,757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2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9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고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당첨자 선정방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전여 세대발생시 천안시 6개월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 해당지역: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 기타지역: ① 천안시 6개월 미만 거주자 ② 충청남도 ③ 대전광역시 ④ 세종특별자치시	1순위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100%) 적용 ...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 추첨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0.11.24.(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215–29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0.11.25.(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0.11.26.(목) 08:00~17:30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0.12.02.(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12.03.(목) ~ 2020.12.12.(토) • 장소 – '이안 그랑센텀 천안'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215–29번지)	• 일시 – 2020.12.14.(월)~2020.12.18.(금)(10:00~16:00) • 장소 – '이안 그랑센텀 천안'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215–29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12.02.(수) ~ 2020.12.11.(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에 한함
	제공일시	2020.12.0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12.14.(월) ~ 2020.12.18.(금) 5일간, 10:00 ~ 16:00	'이안 그랑센텀 천안' 견본주택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215–29번지)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계약시 구비서류(특별공급/일반공급 구비서류 포함)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3–711517	부창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2

※지정된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계약자 대출 안내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입주예정일 : 2023년 6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 계약시	잔금(90%) / 입주지정일	비고
59	12,700,000	1,270,000	11,430,000	
64A	14,900,000	1,490,000	13,410,000	
64B	18,300,000	1,830,000	16,470,000	
74A	19,400,000	1,940,000	17,460,000	
74B	14,400,000	1,440,000	12,960,000	
84A	18,900,000	1,890,000	17,010,000	
84B	14,800,000	1,480,000	13,320,000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안내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MG새마을금고	9005–0001–5845–3	부창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2

■납부방법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옵션	에어컨 설치 위치	판매가	비고
일반형	59/64 (*64B타입 3대 : 거실+안방+침실1)	2대	거실+안방	3,300,000	모델명, 제조사 추후공지 (견본주택 방문 후 옵션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3대	거실+안방+침실2	4,510,000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5,830,000	
	74/84	2대	거실+안방	3,520,000	
		3대	거실+안방+침실2	4,840,000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6,380,000	

(2) 가전/가구제품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세부항목	구분	판매가	비고
빌트인 냉장고		일반형	5,940,000	모델명, 제조사 추후공지 (견본주택 방문 후 옵션 계약 시 확인바랍니다.)
		고급형	7,26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키큰장 포함)		공통	2,090,000	
식기세척기		공통	825,000	
인덕션 2구 + 가스 1구		공통	770,000	
[선택1] 실링착착시스템(원스톱가구) – 실링착착가구+세탁기+건조기		64/74/84	5,830,000	
[선택2] 실링착착시스템(순환형) – 실링착착 순환동선+가구+세탁기+건조기		74/84	6,710,000	
[선택1] 안방 붙박이장 (수납 강화형)		59	2,310,000	
[선택2] 안방 붙박이장 (의류케어 강화형)			3,850,000	
[선택1] 안방 붙박이장 (수납 강화형)		64/74	2,310,000	
		84	2,420,000	
[선택2] 안방 붙박이장 (TV설치형)		64/74	2,310,000	
		84	2,420,000	
의류관리기(에어드레서)		64/74/84	1,540,000	
멀티룸(침실1) – 안방 분리형(슬라이딩도어1SET+시스템가구)		59	1,760,000	
현관패키지(중문+현관창장)		59/64	1,870,000	
현관패키지(중문+현관창장+유리보드)		74/84	2,530,000	
거변형 벽체 슬라이딩 도어		64/74/84	2,420,000	

(3) 유의사항

(4)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IBK기업은행	037–108603–01–123	대우산업개발(주)

VIII 단지여건 및 설계등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초/중학교 배치 관련 유의사항

■공통사항

■견본주택

■단지 내부 여건

■단위세대 및 마감재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어의 손끼임방지 의무화로 거실에 면한 도어에 시공되며, 본 공사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계약

IX 기타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기타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제 8조	창의 기밀성능	적용	KS F22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제품 적용(발코니 외측창 제외)
제 9조	고효율 기자재 적용	적용	변압기, 전동기 고효율기자재 적용
제 13조	대기전력차단장치의 설치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제 14조	일괄소등스위치의 설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60㎡이하 세대 미적용)
제 15조 1호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설치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사용
제 15조 2호	단지 내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제 16조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적용	각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제 17조	절수설비의 설치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설비 적용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주)대종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태성종합기술단	(주)아이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248,418,300원	478,593,636원	721,000,000원

■사업관계자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부창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우산업개발(주)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로 20, 3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6층 601호
법인등록번호	161571–0007805	12011–0592924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20–101–0003100호	일금 일천사백육십억일천삼백일십구만삼천원 정 (₩146,135,913,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iaanca.com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215–29번지

■분양문의 : 1600–8042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iaan

총 816세대 중 **일반 분양 633세대**(전용면적 59~84m^2)

www.iaanca.com

1600-8042